

지스타(G-star)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



구 미 시

지스타(G-star)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~육성~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
- 나.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6회계연도(추경예산)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「지스타(G-star)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」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(1) 대상기관

기관명	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	파트너스라운지(유)
대표	유주현	박상태
설립일	2014.12.17.	2020.06.05.
본사	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	경북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로 66

(2) 출자예정액 : 10억원

- 26년(2.5억원), 27년(2.5억원), 28년(2.5억원), 29년(2.5억원)

(3) 출자근거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
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

나. 사업개요

(1) 조 합 명 : 지스타(G-star)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

- 투자조합 결성예정일 ('26. 12.)

- 결성근거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

(2) 운 용 사 : 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, 파트너스라운지(유) 공동 운영

(3) 출 자 자

- 업무집행조합원 : 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, 파트너스라운지(유)

- 유한책임조합원 : 모태펀드, 경북도·기초지자체, 지역기업

(4) 조합결성액 : 53억원 * 총 결성액 및 투자자 변경될 수 있음

- 연도별출자계획

(단위:억원)

구 분	출자기관	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	합 계	53	13.25	13.25	13.25	13.25
GP(운용사)	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	1	0.25	0.25	0.25	0.25
	파트너스라운지(유)	1	0.25	0.25	0.25	0.25
LP(출자자)	모태펀드	20	5	5	5	5
	경상북도	10	2.5	2.5	2.5	2.5
	구미시	10	2.5	2.5	2.5	2.5
	경산시	10	2.5	2.5	2.5	2.5
	지역기업	1	0.25	0.25	0.25	0.25

(5) 존속기간 : 10년(투자4년, 회수6년)

(6) 투자대상 : 경북 5대 첨단산업 분야* 딥테크 초기창업기업

* ①AI·반도체 ②미래 모빌리티 ③바이오 ④에너지 ⑤방산

(7) 기대효과

- 도내 우수 및 유망기술 벤처기업·스타트업에 자금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

다. 출자 필요성

- (1)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·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·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(2) AI·반도체, 미래모빌리티, 바이오, 에너지, 방산 등 경북 5대 첨단 산업분야 지역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
- (3) 성장성이 인정되는 우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
- (3)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추경 예산 편성(2.5억원) * 출자예정액 10억원

다. 합 의 : 예산재정과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~③ 생략

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□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20조(지원대상)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지스타(G-star)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출자 제안서 상 경북도, 지자체, 지역기업, 모태펀드 출자금액 책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합계
세출	250	250	250	250	1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합계
시비	250	250	250	250	1,000
합계	250	250	250	250	1,0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 임형석(☎480-6052)

소 관 부 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전 기 훈
	담 당 자	임 형 석 (480-6052)